경제혁신
희망의 새시대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 도 자 료
http://www.motie.go.kr
2015년 5월 14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 : 산업부 무역안보과 과장 박종배(044-203-4050), 김태종 사무관(044-203-4053)

산업부, 20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신규 지정

- 카이스트(KAIST), 국내 대학·연구기관 최초로 지정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, 이하 '산업부')는 (주)OCI상사 등 19개 기업과 카이스트(이하 KAIST)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*로 신규 지정하고, '15. 5. 14. 지정서를 수여했다.

* 자율준수무역거래자[CP(Compliance Program) 기업] : 전략물자(기술 포함)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등의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판정, 거래상대방 판단 등의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는 기업 및 대학·연구기관으로 전략물자 수출허가 시 처리기간 단축, 서류 면제 등의 특례를 적용받음

※ 붙임 1 : 전략물자 수출관리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

○ 산업부는 작년까지 신청 기업의 이행능력을 평가해 77개사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했고, **올해 20개를 추가로 심사, 지정했다.**

※ '15. 5월 현재 총 97개(AAA등급 12개, AA등급 68개, A등급 17개)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

□ 특히, KAIST는 전략기술의 이전에 관한 자율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대학·연구기관 중 처음으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을 받았다.

○ 이를 계기로 우리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대학·연구기관의 전략기술 관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산업부는 다른 70여개 신청 기업들에 대해서도 심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.

○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해 대학·연구기관들이 전략기술 관리에 관한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.

○ 또한,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전략물자 관리상태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.

【붙임】 1. 전략물자 수출관리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
2.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신규 지정 명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김태종 사무관(☎ 044-203-405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 전략물자 수출관리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

□ '전략물자' 수출통제 제도

○ 전략물자의 무분별한 거래로 인한 국제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대외무역법 제19조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수출허가 등의 통제 제도

※ '전략물자'란 국제평화,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하여 "전략물자 수출입고시"에 따라 지정, 고시한 '물품 등'(기술 포함)을 말함

□ 자율준수무역거래자(선택형 CP기업) 제도

○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인한 경영상 리스크 예방과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기업에 맞는 자율준수체제 도입 필요

○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자율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는 업체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

- 기업은 수출관리 능력*을 스스로 판단하여 등급을 선택·신청하고, 산업부는 심사 및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와 등급 결정

 * 전략물자 판정능력,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, 자율관리조직의 구축 및 운용 능력 등

○ 지정등급을 3단계(A, AA, AAA)로 구분하여 등급별 특례를 제공하고, 기업의 규모(대/중소) 및 업종(제조/상사)별 평가기준 운영

 * 평가기준 : 수출관리조직 및 규정, 최고경영자의 준수의지, 수출거래심사, 출하관리, 교육, 감사, 문서관리, 위반사항 보고 및 시정조치, 정보보안관리

○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, 불법수출 및 보고의무 미이행 등의 사유 발생 시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가능

□ CP기업에 대한 주요 특례

○ 포괄수출허가* 신청 자격 부여

 * 한 번의 허가로 2~3년간 동일 품목(사용자포괄허가) 또는 동일최종사용자(품목포괄허가)에 대하여 자유로이 수출 가능. 단, 실적보고 의무 부과

○ 개별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(비CP기업 15일 이내, AA등급 10일, AAA등급 5일)

○ 旣수출건과 동일품목·동일최종사용자인 경우 허가신청 서류 면제

붙임2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신규 지정 명단

번 호	구 분	업 종	지정 등급	기 업 명
1	대기업	제조	AA	㈜동부하이텍
2				㈜한화창원사업장
3			A	㈜엘지씨엔스
4		상사	AA	㈜오씨아이상사
5			A	㈜LG상사
6	중소기업	제조	AA	㈜유비쿼스
7				㈜기흥기계
8				㈜케이티엔에프
9				㈜거성
10				워터월시스템즈㈜
11			A	씨앤지하이테크㈜
12		상사	AA	㈜쉥커코리아
13				㈜KWE코리아
14				한국일본통운㈜
15				인텔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코리아(유)
16				이또쯔플라스틱스㈜ 서울지점
17				미디어텍코리아㈜
18			A	㈜천안물류
19				㈜씨알무역
20	대학연구기관		AA	한국과학기술원